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622
----------	-------

제출년월일 : 2021. 5.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체육단체에 대한 정의 추가

○ 시장의 책무(안 제2조의2)

- 시장은 안산시민의 체육에 대한 권리 보장하고, 성별, 연령,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신설

○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안 제5조)

-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시 안산시체육회장 포함토록 정비

○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안 제8조의2)

- 안건 심의시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친족 등의 관계일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 신설

○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세칙 (안 제11조의 2)

-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는 내용 신설

○ 체육회 등에 대한 지원(안 제21~24조)

- 제16조, 제18조, 제20조 각 3항에 있던 운영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항을 담아 제21~24조에 신설

- 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붙임4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1. 1. 1. ~ 2021. 1. 20. (20일간)
 - 입법예고 결과보고 : 붙임5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6
 - 방침결정문 : 붙임7

< 불임 1 >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체육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체육을 향유할 권리
2. 체육 향유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3. 체육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4. 체육시설을 제공받고 이용할 권리
5. 체육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시장과 안산시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으로, “성이”를 “성별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제2장에 제8조의2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의 관

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장(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9장(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을 각각 제9장(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10장(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으로 하고, 제8장(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체육단체 지원 등

제21조(체육회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안산시체육회 및 안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국 등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 등은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단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24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① 체육단체가 사무실 용도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시장으로부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체육진흥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체육진흥과장 김 용 선
	담당·팀장 직위·성명	체육진흥팀장 정 남 진
	담당자 성명·전화	강희경 (행정 2146)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0.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5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되되, 특정 성이 위촉</p>	<p>제2조(정의) -----</p> <p>-----.</p> <p>1. ~ 10. (현행과 같음)</p> <p><u>11.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u></p> <p><u>제2조의 2(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체육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1. 체육을 향유할 권리</u></p> <p><u>2. 체육 향유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u></p> <p><u>3. 체육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u></p> <p><u>4. 체육시설을 제공받고 이용할 권리</u></p> <p><u>5. 체육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u></p> <p><u>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③ 시장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u>제5조(협의회 구성 등) ① ----- 시장과 안산시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 성별이 -</u></p>

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후단의 경우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안산시성평등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 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 설>

-----. <단서 삭제>

② ----- 시장-----

③ ----- 담당
실·국장-----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

1. 심의안전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전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안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경비의 지원)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안산시체육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의 지원)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안산시체육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경비의 지원)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안산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1조의2(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5조(경비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7조(경비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장 체육단체 지원 등

제21조(체육회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안산시체육회 및 안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국 등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 등은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단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3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신 설>

제24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① 체육단체

가 사무실 용도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시장으로부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장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21조 ~ 제27조 (생 략)

제9장 보칙

제28조 ~ 제31조 (생 략)

제9장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25조 ~ 제31조 (현행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와 같음)

제10장 보칙

제32조 ~ 제35조 (현행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와 같음)